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2)

2010. 11. 23(화) 10:00

제174회 정례회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 검토 안 건 》

-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회 운영 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 안 번 호	2387
------------	------

발의연월일 : 2010년 11월 일
발 의 자 : 정훈·김용 의원 등 8인

□ 제안이유

- 의원의 입법 발의 및 성남시의회 법률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제명의 법률고문을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명)
- 현행 법률고문 2인을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각각 2인으로 조정함. (안 제2조)
-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역할·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의 내용을 재정비함. (안 제3조)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의 내용을 재정비함. (안 제4조)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운영과 자문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제8조)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각각 2인으로 한다.

제3조(고문의 역할·범위)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2.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소송사건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고문의 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고문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이 위임한 소송 사건을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고문의 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고문의 운영) ①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고문 운영의 비용)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검 토 의 견

- 조례안의 명칭을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한 것은 입법고문 제도의 신설 취지와 부합됨
- 안 제1조의 목적 조문에
입법고문을 추가하여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변경한 것은 고문의 성격과 운영에 맞도록 정의됨
- 안 제2조는
입법고문 2명을 추가하여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각각 2명으로 변경한 것은 입법고문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3조는
입법고문이 자문할 대상을 3개 분야(제1호~제3호)로 신설하고 법률고문의 역할을 3개 분야(제1호~제3호)로 정비됨에 따라 고문의 역할과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4조는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입법자문이 이루어지고 자문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입법고문제도의 신설 취지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성남시의회의 입법기능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1. 지방자치단체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현황

지방자치단체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현황

구분 자치단체	인 원		위촉기간	수당 (월)	비고
	입법고문	법률고문			
성남시	-	2명	2년	30만원	
경기도	5명	5명	2년	20만원	10만원 추가 (4건이상 자문시)
서울시	5명	5명	2년	20만원	10만원 추가 (3건이상 자문시)
인천시	5명	5명	2년	25만원	건당 5만원 추가
부산시	-	2명	2년	20만원	
대구시	-	1명	2년	15만원	
수원시	-	2명	2년	20만원	10만원 추가 (4건이상 자문시)
안양시	-	2명	2년	20만원	
부천시	-	3명	2년	20만원	10만원 추가 (5건이상 자문시)